

# 등급분류 위원회 운영 규정

제 정 : 2013. 3. 27

**제1조 (설치 및 명칭)** 본 위원회는 정관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등급분류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칭함)라 칭한다

**제2조 (목적)** 본 위원회는 대한장애인럭비협회(이하 “본 협회” 라 칭함)가 주최·주관 하는 각종 경기대회에서 등급분류사들의 공명정대한 등급활동의 보장과 선수들의 등급을 장려하며, 독립적인 지위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 (적용)** 본 협회에 소속되어 일정한 자격을 부여받은 등급분류사 및 선수등급에 적용한다.

**제4조 (기능)**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공정한 등급분류사상 확립을 위한 건의 및 자문
2. 등급분류수칙 제·개정 및 실천에 관한 사항
3. 등급분류사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
4. 등급분류사의 지위향상을 위한 권익보호 활동에 관한 사항
5. 위원회 규정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6. 국제등급분류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
7. 국내 퀘드 선수들의 등급에 대한 사항

**제5조 (조직)**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, 위원 약간인을 포함하여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본 협회 회장이 임원 중에서 임명하고,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에 의해 반드시 등급분류자격을 소지한 자로 임명한다.

**제6조 (임기)** ① 본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해당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한하며, 해당 직위의 변경 또는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후임자가 승계할 수 있다.

② 본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장은 위원장을 포함한 각 위원에 대하여 임명, 해임 할 수 있다.

**제7조 (운영)**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.

1.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괄하며,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2. 본 위원회는 본 협회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하며 이를 본 협회 강화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3. 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·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4. 본 위원회가 심의할 안건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 할 수 있으며, 그 결과를 차기 본 협회 강화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.
5. 위원장 및 위원이 계류중인 심의대상자가 되거나 직접 이해 관련이 있는 경우에 심의 또는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.
6. 위원의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

**제8조 (직무 및 권한)** ① 본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본 협회 강화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조치할 수 있으며, 특별한 사유 없이는 거부될 수 없다.

② 필요한 경우에 본 위원회의 의결로써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본 협회에 건의할 수 있다.

**제9조 (역할)** ① 본 위원회는 등급분류위원장 및 등급분류요원에 대해 일정한 자격과 직무를 부여해야 한다.

② 본 위원회는 각종 대회에서의 등급분류활동 및 등급분류교육과정, 등급분류회의 등의 행사참가에 따른 경비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도 있다.

③ 본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등급분류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평가과정을 거쳐 등급분류활동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.

④ 본 위원회는 매년 우수등급분류사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불공정 또는 부도덕하거나 등급분류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자에 대해 본 협회 강화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조치를 하여야 한다.

**제10조 (자격)** 자격기준과 선별은 다음의 조건에 의해 자격이 주어진다.

① 본 위원회에서 개최하는 등급분류 강습회에서 소정의 성적으로 합격하였을 경우 절차에 의해 자격이 주어진다.

② 급수는 표-1의 의해 진행하며 자격과 동시에 본 위원회 혹은 본 협회에서 운영하는 대회에 공인 등급분류사로 활동이 가능하다.

**제11조 (징계)** 등급분류활동에 있어 본 협회에서 승인 하지 아니한 대회에 참가하여 등급분류 활동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를 걸쳐 징계한다.

**제12조 (선수등급판정)** ① 선수의 평가 및 등급 부여 이외의 사항을 국내 실정을 고려하여 본 위원에서 결정하며 이 결정사항은 제 8조에 의거의 본 협회 강화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조치할 수 있다.

② 국제 등급부여자에 관한 국내 적용은 다음과 같다.

가. 국제등급 Permanent (P)자의 등급에 한하여 국내 적용한다.

나. 국내등급 Korea (K) : 매년 국내 대회 2경기 이상 참가 중 본 위원회에 의해 동일 등급을 2회 이상 받은 선수로 등급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패널을 통해 확인됐을 때 부여한다.

다. 등급의 상태 K(K Sport Class status)는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이의제기 (protest)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할 수 없다.

라. 선수의 장애 정도에 변화가 있을 때

마. 경기 전에 현재 선수의 등급을 나타내지 않는, 눈에 띄게 보다 크거나 적은 능력을 보일 때

바. 등급분류 패널의 실수로 부여된 등급이 선수의 능력과 일치 하지 않을 때

사. 등급분류 기준에 변화가 있을 때(등급분류 규정의 변화)

③ 이외의 등급의 상태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및 위원회의 판단 하에 등급 변화가 가능하다.

④ 선수등록을 한 선수는 매년 1회 이상 반드시 국내경기에 참여하여 등급 및 재등급 을 받아야 한다.

**제13조 (등급 소청)** 휠체어러키 국제 등급분류 규정 7항에 의해 팀(선수)는 다른 선수 혹은 본인의 등급에 대해 소청이 가능하다. 국내 대회에 한해 소청에 대한 비용은 표-2 등급 소청 비용을 참고한다. 또한 등급소청에 대한 사항은 최소 경기 하루 전에 신청되어야 한다.

**제14조 (등급 적용)** 소청에 의해 등급이 변화하는 경우 등급분류 규정 7항에 의해 준결승이상을 제외하고는 다음 시작 경기(게임)부터 적용된다. 준결승이상의 경우 다음 대회부터 적용된다.

**제15조 (준용)**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준용할 수 없을 때와 해석이 불분명한 때에는 본 협회 정관 및 제 규정 또는 본 협회가 결정한 바에 따르며 국제등급분류 규정을 준용한다.

**부 칙 (12. 3. 27)**

**제1조 (시행일)**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<표-1> 급수별 자격 기준 및 활동 범위

급수	자격 조건	실기검정	활동범위
1급	가. 2급 자격 소지자로 10년 이상 활동을 하여 휠체어력비 등급분류에 대한 능력이 인정된 자 나. 타 종목 등급분류의 경력이 20년 이상인자 다. 박사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등급분류 경력이 인정된 자 라. 국제 3등급분류사로 등록된 자 마. 위의 사항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되며 위원회에 승인을 득한 자	*필기검정 : 면제 *교육 10시간이상 이수	* 2급의 조건 포함 * 위원장 자격 부여
2급	가. 3급 자격 소지자로 5년 이상 활동을 하여 휠체어력비 등급분류에 대한 능력이 인정된 자 나. 타 종목 등급분류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다. 박사이상의 학력을 소지하였으나 경력이 없는 자 라. 위의 사항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되며 본 위원회에 승인을 득한 자	*필기검정 : 면제 *교육 10시간이상 이수	* 3급의 조건 포함 * 교육 지원 관리 * 국제교류대회 지원
3급	가. 4급 자격 소지자로 1년 이상 10회 이상의 활동 경력을 가진 자로 자격검정시험에서 80점 이상 득점한 자 나. 석사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 다. 타 종목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라. 위의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	*필기검정 : 80% *교육 10시간이상 이수	* 4급의 조건 포함 * 교육 지원 관리 * 국제교류대회 지원
4급	가. 대한장애인력비협회에서 주최하는 강습회 수료 후 자격검정시험에서 70점 이상 득점한 자	*필기검정 : 70% *교육 10시간이상 이수	* 국내 승인 대회 활동 부여

<표-2> 등급 소청 비용

가. 등급소청 비용

구분	금액	비고
본인의 경우	100,000원	
타인의 경우	100,000원 + 여비(실비)	여비는 반환되지 않음

\*\* 단. 대회중의 소청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< KWRA 등급분류 이의 제기 양식 (KWRA Classification Protest Form) >

■ 개인정보 제출 양식 (감독, 팀대표)

등록번호	접수일자	비고
*기재하지 않음	*기재하지 않음	

이 름 : 경남장애인체육회  
 국 가 : 경상남도  
 포 지 선 :  
 성 명 :  
 일 시 : 2012 /  
 이의제기 선수 성명 : 경상북도 김소영, 하재현  
 팀 : 경상북도  
 등 급 분 류 : 김소영 (2.5) , 하재현 (3.0)  
 받 은 일 시 :  
 수수료지불(100,000원) : 협회 입금  
 선임등급분류사 또는 대리자 지명 :

■ 이의제기 패널의 결정

일 시  
 패 널 이 름  
 패 널 성 명  
 수수료 환불 여부 Yes No

\* 이양식은 협회공문을 통해 등급분류 수석 또는 선임 등급분류사에게 제출되어야 한다.